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법률 제 호

의안 번호	3763
----------	------

발의연월일 : 2016. 11. 22.
발의자 : 박대출 · 홍문종 · 송희경
유민봉 · 정갑윤 · 김정재
염동열 · 김태흠 · 최연혜
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정된 지 6년이 지나면서, 제정 당시와의 시간 경과에 따른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초고성능 컴퓨터 개발을 위해 ‘초고성능 컴퓨팅 사업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10년간 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힘. 초고성능 컴퓨터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효율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수임.

이에,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초고성능 컴퓨터의 국산화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초고성능 컴퓨터의 활용과 산업화 촉진을 강화하려고 함(안 제2조 및 제9조, 제9조의2 신설 등).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고성능컴퓨터”란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처리·활용 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를 말한다.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의 장구에 관한 사항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시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초고성능

컴퓨팅센터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로 한다.

1.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2.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터 분야에 관한 인력수급전망
- ④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전문센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전문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운영 및 서비스 제공
2.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의 확산
3.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대용량 데이터의 관리·운영 지원

4. 인력 양성, 기술개발 등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에 관한 업무
- ③ 전문센터의 운영지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중 “도입”을 “확보”로 하고, 같은 조 중 “선진국”을 “세계 최고”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5조의 기본계획을”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로, “분석할 수 있다”를 “분석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u><신 설></u>	제2조(정의) ----- -----. 1. “초고성능컴퓨터”란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처리·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를 말한다.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생 략) <u><신 설></u>	1. (현행과 같음)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의 강구에 관한 사항
2. ~ 8. (생 략)	3. ~ 9. (현행 제2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시책 강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시책을 강구	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시책 강구) ① ----- ----- ----- ----- -----

한다.

<신 설>

제9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 ① · ② (생 략)
③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1. ~ 11. (생 략)

- ④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시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2.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 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터 분야에 관한 인력 수급전망

4. ~ 14. (현행 제3호부터 제1호까지와 같음)

④ 국가초고성컴퓨팅센터는 제

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초고성능컴퓨팅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제9조의2(전문센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운영 및 서비스 제공
2.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

